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2010.1.1.)

◇ 개정이유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떨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데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3) 자연스럽게 읽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

-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법 제7조)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10조)

-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조의2)

-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법 제13조)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14조)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제18조)

-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 2) 내·외국인 간,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 과세형평 제고 등 소득세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22조)

-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29조)

- 1)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상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 2) 사회기반시설 채권발행 활성화를 통하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법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 1) 기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기업의 주식을 교부받고 청산하거나,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고 다른 기업의 100퍼센트 자회사가 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 2) 기업이 구조개편 유형별 장점을 살려 적합한 구조개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47조의3)

- 1)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하여 완화하는 조치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

- 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합병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에서 7년간 100퍼센트, 3년간 50퍼센트로 확대하되,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2)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4조)

-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농공단지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6조)

-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계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버.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7조)

- 1) 영어조합법인의 어업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기업적 어업경영을 세계측면에서 지원하여 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설(법 제67조)

- 1)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2)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8조)

-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계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저.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법 제70조)

- 1)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 2)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취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처.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73조)

-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 2) 기부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공익사업지역 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함(법 제77조 및 제133조)

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3)

-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4)

-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됨.

히.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법 제85조의9 신설)

-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2)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20%를 세액감면 함(법 제85조의10 신설)

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87조)

- 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 2)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하고 중복적인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소득과세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87조)

-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되,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하도록 함.
-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모.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2)

- 1)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금년 말 이전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 2) 비과세 일몰 종료로 인하여 이익이 아닌 손실회복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91조의13 신설)

- 1)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 2) 녹색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법 제99조의5 신설)

- 1) 일정규모 이하의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 개업 또는 취업을 할 경우 2009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함.
-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법 제100조의3)

조.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법 제101조)

- 1) 상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02조)

-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영세한 임업가구에 대한 지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법 제104조의6)

-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을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2)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하여 국내 외화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법 제104조의9 신설)

- 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함.
- 2)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104조의12 신설)

-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 시 상계하거나 5년 후 익금산입하도록 함.
-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 1)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경감으로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됨.

구.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 1)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 1)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섬 주민에 대한 저렴한 전력공급 지원이 기대됨.

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 1)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근로자·학생 등의 식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루.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 1) 농업·어업을 대행해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부족한 농어촌인력을 보완하여 농어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 1)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08조)

- 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9/109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 2)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법 제 111조의2).

우.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116조)

1)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인지세가 면제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법 제117조)

1)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2)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금융상품 간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19조 및 제120조)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현행 제121조의6 삭제)

1)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 후 5년간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기술제공자인 외국 법인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2) 내·외국기술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권만 외국으로 넘어가는 과세권 일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후.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법 제121조의17)

그.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법 제

122조의3)

- 1)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 2) 수입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제126조의2)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함.
-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드. 최저한세율 조정(법 제132조)

- 1) 법인세 최고세율이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은 현행대로 14%를 유지하고, 100억원 초과 1천억원 미만의 구간 역시 현행대로 11%를 유지하며, 100억원 이하는 당초 계획대로 10%로 인하함
-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역시 당초 계획대로 현행 8%에서 7%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u>중과</u>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u>중과(重課)</u>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 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

현행	개정
<p>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p> <p>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p> <p>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p> <p>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p> <p>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p> <p>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p>	<p>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p> <p>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p> <p>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p> <p>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p> <p>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p> <p>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p>

현행	개정
<p>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의한다</u>.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u>업종은</u>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p> <p>제3조(조세특례의 제한)</p> <p>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u>의하지</u>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생략)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 	<p>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u>따른다</u>.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u>업종에 대해서는</u>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p> <p>제3조(조세특례의 제한)</p> <p>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u>따르지</u>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현행과 같음)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

현 행	개 정
<p>치도세에 <u>한한다</u>)</p> <p>25. (생 략)</p> <p>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u>의하여</u>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 <u>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직접국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p> <p>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u>영위하는</u>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당해</u>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u>당해</u> 투자가 이루어지는 <u>각 과세연도마다 당해</u>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u>제1항</u></p>	<p>치도세에 <u>관한</u> 규정만 해당한다)</p> <p>25. (현행과 같음)</p> <p>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u>따라</u>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 <u>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직접국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p> <p>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u>경영하는</u>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해당</u>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126조와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p>② <u>제1항에 따른</u>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u>그</u> 투자가 이루어지는 <u>과세연도마다 해당</u>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u>제1항을</u> 적용받</p>

현행	개정
<p>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p>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p>	<p>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p>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현 행	개 정
<p>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열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 2. 제조업 	<p>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열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 2. 제조업

현 행	개 정
<p>3. 건설업</p> <p>4. 음식점업</p> <p>5. 출판업</p> <p>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p> <p>7. 방송업</p> <p>8. 전기통신업</p> <p>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p> <p>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p> <p>11. 연구개발업</p> <p>12. 광고업</p> <p>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p> <p>14. 전문디자인업</p> <p>15. 전시 및 행사대행업</p> <p>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p> <p>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p> <p>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p> <p>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p> <p>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p> <p>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p> <p>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u><신 설></u></p>	<p>3. 건설업</p> <p>4. 음식점업</p> <p>5. 출판업</p> <p>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p> <p>7. 방송업</p> <p>8. 전기통신업</p> <p>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p> <p>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p> <p>11. 연구개발업</p> <p>12. 광고업</p> <p>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p> <p>14. 전문디자인업</p> <p>15. 전시 및 행사대행업</p> <p>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p> <p>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p> <p>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p> <p>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p> <p>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p> <p>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p> <p>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u>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u></p>

현행	개정
<p>〈신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p> <p>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p>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p> <p>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 원하는 기업에 <u>대하여는</u> 2011년 12월 31 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 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u>수도권 안에 소 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u>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p> <p>1. 감면업종</p> <p>가. 작물재배업</p> <p>나. 축산업</p> <p>다. 어업</p> <p>라. 광업</p> <p>마. 제조업</p> <p>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 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p> <p>사. 건설업</p> <p>아. 도매 및 소매업</p> <p>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p> <p>차. 출판업</p> <p>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 판 및 원판녹음업</p> <p>타. 방송업</p> <p>파. 전기통신업</p> <p>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 리업</p> <p>거. 정보서비스업</p> <p>너. 연구개발업</p> <p>더. 광고업</p> <p>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p> <p>머. 포장 및 충전업</p> <p>버. 전문디자인업</p> <p>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p>	<p>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p> <p>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u>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u> 2011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 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u>수도권에 있는 경 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u>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p> <p>1. 감면 업종</p> <p>가. 작물재배업</p> <p>나. 축산업</p> <p>다. 어업</p> <p>라. 광업</p> <p>마. 제조업</p> <p>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 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p> <p>사. 건설업</p> <p>아. 도매 및 소매업</p> <p>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p> <p>차. 출판업</p> <p>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 판 및 원판녹음업</p> <p>타. 방송업</p> <p>파. 전기통신업</p> <p>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 리업</p> <p>거. 정보서비스업</p> <p>너. 연구개발업</p> <p>더. 광고업</p> <p>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p> <p>머. 포장 및 충전업</p> <p>버. 전문디자인업</p> <p>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p>

현행	개정
<p>가는 제외한다)</p> <p>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p> <p>저. 엔지니어링사업</p> <p>처. 물류산업</p> <p>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p> <p>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u></p> <p>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p> <p>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p> <p>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p> <p>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p> <p>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가는 제외한다)</p> <p>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p> <p>저. 엔지니어링사업</p> <p>처. 물류산업</p> <p>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영위)하는 사업</p> <p>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u></p> <p>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p> <p>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p> <p>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p> <p>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p> <p>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p> <p>로. <u>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u></p> <p>모. <u>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u></p> <p>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p>
<p>2. 감면비율</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p> <p>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p> <p>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p>	<p>2. 감면 비율</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p> <p>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p> <p>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p>

현행	개정
<p>의 규정에 의한 <u>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u> : 100분의 30</p> <p>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u>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u> : 100분의 5</p> <p>마. 중소기업의 사업장으로서 <u>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u> : 100분의 10</p> <p>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u>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u> : 100분의 15</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p> <p>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u>중소기업에게</u>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u>네트워크론</u>제도를 이용하여 <u>중소기업에게</u>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u>제2항의 규정에 따라</u>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회서로 결제한 금액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u>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u> 	<p>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u>경영하는 사업장</u> : 100분의 30</p> <p>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u>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u> : 100분의 5</p> <p>마. 중소기업의 사업장으로서 <u>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u> : 100분의 10</p> <p>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u>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u> : 100분의 15</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p> <p>① 중소기업을 <u>경영하는</u>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u>중소기업에</u>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u>경영하는</u> 내국인이 <u>네트워크론(network loan)</u> 제도를 이용하여 <u>중소기업에</u>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u>제2항에 따라</u>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u> 해당하는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u>해당</u>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회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u>해당</u> 거래에 대한 「<u>부가가치세법</u>」 「<u>소득세법</u>」 및 「<u>법인세법</u>」에 따른

현 행	개 정
<p>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p> <p>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p> <p>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p> <p>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u>음의 수</u>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p>	<p>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p> <p>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p> <p>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u>구매 론(loan) 제도</u>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p> <p>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u>음수(陰數)</u>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p>

현행	개정
<p><u>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u></p> <p>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u>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구매대금</u>”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u>판매대금</u>”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u>환어음</u>”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u>판매대금추심외서</u>”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p>	<p><u>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u></p> <p>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u>1만분의 15</u></p> <p>③ <u>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구매대금</u>”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u>경상적(經常的)</u>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u>판매대금</u>”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u>경상적</u>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u>구매기업에</u>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u>받는</u> 금액을 말한다.</p> <p>3. “<u>환어음</u>”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u>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u>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u>판매대금추심외서</u>”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p>

현 행	개 정
<p>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의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의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의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의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현행	개정
<p>특례 등)</p> <p>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 가액을 차감한 가액 <p>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p> <p>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 	<p>특례 등)</p> <p>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 가액을 뺀 가액 <p>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p> <p>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

현 행	개 정
<p>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p>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p>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p>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현행	개정
<p>2. 법인이 <u>해산한 때</u>.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 법인이</u>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u>대하여</u>는 해당 과세연도 <u>과세표준신고 시</u>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p>	<p>2. 법인이 <u>해산하였을 때</u>.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 법인이</u>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u>대해서는</u> 해당 과세연도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p>

현행	개정
<p>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p> <p>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p> <p>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p>	<p>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100\text{분의 } 3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times 2\text{분의 } 1$

현행	개정
<p><u>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u> <u>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u></p> <p>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p> <p>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p>	<p>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p> <p>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p>

현 행	개 정
<p>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u>폐업 또는</u>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u>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u>합병 또는</u>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u>경우를</u>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u>대하여는</u>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에 한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p>	<p>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p> <p>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u>폐업하거나</u>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u>합병하거나</u>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u>경우는</u>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u>제1항에</u>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u>대해서는</u>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u>제출과</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해당</u>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 해당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p>

현행	개정
<p>시설</p> <p>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시설</p> <p>3.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u>당해</u>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u>당해</u>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u>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한</u>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u>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삭제</p> <p>② <u>내국인이</u> 특허권, 실용신안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u>대통령령이</u>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u>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u>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u>당해</u>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③ <u>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는 시설</p> <p>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시설</p> <p>3.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p> <p>③ <u>제1항에 따른</u>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u>그</u>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u>해당</u>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u>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④ <u>제3항에 따른</u> 투자금액의 계산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u>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p> <p>② <u>중소기업이</u> 특허권, 실용신안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u>100분의 7에</u> 상당하는 금액을 <u>해당</u>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 해당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u>해당</u>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③ <u>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현 행	개 정
<p>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p>	<p>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 <p>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p>

현행	개정
<p>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 	<p>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

현 행	개 정
<p>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p>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p>	<p>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p>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p>

현행	개정
<p>·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p>2의2.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p>5. 삭제</p> <p>6.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 	<p>· 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p>2의2.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p>6.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

현행	개정
<p>초기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p> <p>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⑧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초기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p> <p>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p> <p>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p> <p>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p> <p>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p> <p>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⑧ 제1항 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 제2호·제2호의2·제3호</p>

현행	개정
<p>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p> <p>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u>의하여</u>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u>의하여</u>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u>경과되기</u>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u>해당하게</u>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p>	<p>· 제4호·제6호 및 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p> <p>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u>따라</u>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u>따라</u>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u>지나기</u>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게</u>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u>소득금액</u>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p>

현 행	개 정
<p>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p>③ 삭 제</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p> <p>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p> <p><신 설></p>	<p>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p>

현행	개정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p> <p>제20조(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p>	<p>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p> <p>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p> <p>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p>

현 행	개 정
<p>한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u>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의</u>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p> <p>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u>당해 공공차관협약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p> <p>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p>② 삭제</p> <p>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p>	<p>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u>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p> <p>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u>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u>같은 법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u>외국환거래법</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p>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p>
<p>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p>	<p>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p>

현행	개정
<p>① 내국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u>분</u>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p>	<p>① 내국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u>부분</u>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p>
<p>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p>	<p>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p>
<p>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생략) 5. 전자상거래설비 6.·7. (생략)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 	<p>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전자상거래설비 6.·7. (현행과 같음)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

현 행	개 정
<p><u>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u></p> <p><u><신 설></u></p> <p>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u>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u>에 해당하는 설비를 <u>2009년 12월 31일</u>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u>제4항의 규정</u>을 준용한다.</p> <p>④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u>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시설에 <u>2009년 12월 31일</u>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u>제4항의 규정</u>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삭 제 3. <u>유통산업발전법</u>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u>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u>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p><u>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u></p> <p>9. <u>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u></p> <p>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u>제1항 제4호부터 제7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u>2012년 12월 31일</u>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u>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u>제4항</u>을 준용한다.</p> <p>④ <u>제1항 및 제2항</u>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시설에 <u>2012년 12월 31일</u>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u>제4항</u>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u>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현행	개정
<p>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u>의하여</u>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보강 또는 확장한</u> 시설</p> <p>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p> <p>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p> <p>② <u>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u> 내국인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에너지절약 시설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u>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에 한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u>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신설〉</p> <p>② <u>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u> 내국인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환경보전</p>	<p>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u>따라</u>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보강하거나 확장한</u> 시설</p> <p>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p> <p>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p> <p>② <u>제1항을 적용받으려는</u> 내국인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에너지절약 시설에 <u>2011년 12월 31일까지</u>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u>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 해당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u>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u></p> <p>② <u>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u></p> <p>③ <u>제1항을 적용받으려는</u> 내국인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환경보전</p>

현 행	개 정
<p>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u>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에</u>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u>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u>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u>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에</u>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에 한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u>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u>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u>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p> <p>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에 한정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u>100분의 10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p>	<p>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p> <p>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u>100분의 10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율을 곱하여</u>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u>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현행	개정
<p><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u></p> <p>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u>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을 함에 있어서 그 <u>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u></p> <p>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u>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해당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u>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u></u></p> <p>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신</p>	<p>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u>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u>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u></p> <p>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u>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u></p> <p>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p>

현 행	개 정
<p>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 <u>고자</u>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u>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u>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u></p> <p>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p> <p>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u>고자</u>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p>	<p>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 <u>으려는</u>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u>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u></p> <p>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p> <p>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u>그</u>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損費)로 계상(計上)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u>으려는</u>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 시기, 투자의 개시 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 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

현행	개정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p> <p>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p> <p>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p>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p>	<p>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p> <p>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p> <p>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p>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p>

현 행	개 정
<p>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u>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u>제56조의 규정에</u>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u> 경우 <p>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u>제2항의 규정에</u>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u>제4호의 규정을</u>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p>	<p>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u>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u>제56조에</u>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u>같은 종류의</u>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u>하던</u>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u>같은 종류의</u>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경우 <p>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u>제2항에</u>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u>제4호를</u>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p>

현행	개정
<p>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u>당해</u>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u>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u>창업자금사용내역을</u>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u>창업자금사용내역이</u>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u>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u>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p> <p>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u>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2항의 규정</u>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u>영위하는 경우</u>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u>새로이</u>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u>제3항의 규정</u>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u>당해</u>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u>당해</u>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u>당해</u>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u>당해</u>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u> : <u>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u> 금액 <p>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p>	<p>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u>해당</u>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u>제2항에 따라</u> 창업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u>창업자금 사용명세를</u>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u>창업자금 사용명세가</u>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u>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u>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p> <p>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각 호의 구분에 따른</u>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2항에 따라</u>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u>경영하는 경우</u>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u>새로</u>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u>제3항에 따라</u>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u>해당</u>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u>해당</u>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u>해당</u>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u>해당</u>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u>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금액 <p>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p>

현 행	개 정
<p>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p> <p>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p> <p>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 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p> <p>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p> <p>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 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
<p>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p>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u>부 또는 모</u>가 사망한 경우에는 <u>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u>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u>수증자</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u>해당</u>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u>수증자가 증여일</u>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u>해당</u>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u>해당</u>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u>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u> <p>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p>	<p>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p> <p>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u>경영한</u>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u>아버지나 어머니</u>가 사망한 경우에는 <u>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u>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u>자</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u>가업을 승계한 후</u> 주식등을 증여받은 <u>날</u>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u>그</u>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u>가업을</u>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u>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u> <p>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p>

현행	개정
<p>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 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 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p> <p>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u>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u> (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u>대하여는</u>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u>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6조 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u> 통합법인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u>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p> <p>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p>	<p>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p> <p>①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u>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u>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6조 제1항 및 <u>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u>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u>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u> 통합법인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u>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u>대해서만</u> 적용한다.</p> <p>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p>

현행	개정
<p>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p> <p>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p> <p>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p> <p>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p>	<p>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p> <p>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p> <p>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p>

현 행	개 정
<p>을 이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u>대하여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을 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u>당해</u> 사업을 <u>폐지 또는</u> 해산한 경우에는 <u>당해</u>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p>	<p>다)을 이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u>대해서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均分)한</u>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u>해당</u> 사업을 <u>폐업하거나</u>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p>

현행	개정
<p>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역에서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p>	<p>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p>

현 행	개 정
<p>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p> <p>2.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p> <p>② <u>제1항 제2호의</u>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u>제1항의</u>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u>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⑤ <u>제1항의</u>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기업이 채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한</u>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p>	<p>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p> <p>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p> <p>② <u>제1항 제2호를</u>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과세연도에 <u>대해서</u>는 <u>같은 항에</u>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u>제1항을</u>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u>폐업하거나</u> 해산한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을</u>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에</u>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⑤ <u>제1항을</u>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기업이 채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한까지</u>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p>

현행	개정
<p>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과세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 내국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p>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 내국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p>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 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p> <p>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 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 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p> <p>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 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p>

현행	개정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

현행	개정
	<p>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자산·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p> <p>⑥ 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제4항에 따라 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p>⑦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6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⑧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신설〉</p>	<p>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까지의 기간, 인수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p> <p>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현행	개정
<p>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p>	<p>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p>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p>

현행	개정
<p>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u>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u></p> <p>② <u>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u>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u></u></p> <p>1. <u>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u></p> <p>가. <u>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u></p>	<p>(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u>금융지주회사법</u>」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u>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u></p> <p>② <u>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u>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u></u></p> <p>1. <u>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u></p> <p>가. <u>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u></p>

현 행	개 정
<p>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p> <p>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p> <p>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p> <p>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p> <p>③ <u>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u></p> <p>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u>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u></p> <p>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p>	<p>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p> <p>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p> <p>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p> <p>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p> <p>③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u></p> <p>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u>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u></p> <p>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p>

현행	개정
<p>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p> <p>4. 전환지주회사의 <u>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u>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u>수회</u>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u>그 거주자</u>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u>최대주주</u>”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p> <p>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u>중간지주회사</u>”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u>소득세</u>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u>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u>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u>주식양도차익</u>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p>	<p>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p> <p>4. 전환지주회사의 <u>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u>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u>여러 차례</u>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u>그 주주</u>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u>최대주주</u>”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p> <p>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u>중간지주회사</u>”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u>양도소득세</u>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u>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u>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u>양도차익</u>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p>

현행	개정
<p>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u>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u>당해</u>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u>당해</u>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u>폐지하거나</u>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p>	<p>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u>해당</u> 사업연도의 <u>개월</u>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u>그</u>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u>폐업하거나</u>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합병법인 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p>

현 행	개 정
<p>인은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u>균등액 이상</u>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p>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u>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구분한 금액 이상</u>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p>

현행	개정
<p>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p>	<p>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p>

현행	개정
<p>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p>	<p>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p>

현 행	개 정
<p>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p> <p>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내국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 	<p>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p> <p>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내국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

현행	개정
<p>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p> <p>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u>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p>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u>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p>	<p>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p> <p>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u>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p>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u>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p>

현 행	개 정
<p>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p> <p>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p> <p>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현행	개정
<p>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p>	<p>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p>

현 행	개 정
<p>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 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u>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p>	<p>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 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u>대해서는</u>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u>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p>

현행	개정
<p>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현 행	개 정
<p>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p>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 	<p>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p>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u>결정</u>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

현행	개정
<p>우</p> <p>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⑤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p>	<p>우</p> <p>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⑤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p>

현 행	개 정
<p>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u>제휴법인간</u>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u>1인</u>과 <u>대통령령이</u>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최대주주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에 체결할 것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u>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u>제휴법인 간의</u>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u>1명과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최대주주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p>② <u>제1항에 따라</u>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u>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u>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u>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u>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p>	<p>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물류산업을 <u>경영</u>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u>경영</u>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주권상장법인</u>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p>

현행	개정
<p>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u>당해</u>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u>새로이</u>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u>당해</u>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u>당해</u>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p>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u></p> <p>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 	<p>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u>그</u>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u>새로</u>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u>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그</u>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u>그</u>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에 체결할 것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u></p> <p>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 행	개 정
<p>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u>대하여는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u>폐지하거나</u>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u>해당사유가</u>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u>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u>대하여는</u>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이자율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u>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u>폐업하거나</u>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u>그 사유가</u>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u>대해서는</u>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u>비율</u>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이자율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u>분할신설법인</u>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법인</u>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u>상대방법인</u>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u>본문의 규정</u>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u>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법인</u>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u>규정</u>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p>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u>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u>에 따른 결손금은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u>동법 제45조의 규정</u>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u>과세표준계산</u>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p>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u>분할로 신설되는 법인</u>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 법인</u>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u>상대방 법인</u>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u>본문에</u>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u>상대방 법인</u>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p>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u>경영</u>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u>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u>(이하 “<u>피합병법인</u>”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u>같은 법 제45조에</u>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u>과세표준을 계산할 때</u> 공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현행	개정
<p>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p> <p>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p> <p>4.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p> <p>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p> <p>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p> <p>2. 제46조의6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3. 삭제</p> <p>4. 삭제</p> <p>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p>	<p>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p> <p>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p> <p>4.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p> <p>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p>

현행	개정
<p>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u>균등액 이상을</u>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u>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u>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u>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 이상을</u>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u>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u>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u>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p>	<p>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p>

현 행	개 정
<p>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u>손실보전준비금으로부터</u>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p> <p>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금에 산입한다.</p> <p>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p>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u>손실보전준비금부터</u>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p> <p>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금에 산입한다.</p> <p>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현행	개정
<p>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p>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填)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현행	개정
<p>것</p> <p>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삭 제</p> <p>② 삭 제</p> <p>③ 삭 제</p> <p>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⑤ 삭 제</p> <p>⑥ (생략)</p> <p>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u>상장유가증권</u>에의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u>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u>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p> <p>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p>	<p>것</p> <p>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u>그 임대업</u>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u>그 사업</u>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u>끝나는</u>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u>상장유가증권</u>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u>법인세법</u>」 제40조에도 불구하고 <u>그 조합</u>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p> <p>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p>

현행	개정
<p>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삭제</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⑤ 삭제</p> <p>⑥ 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p>	<p>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p>

현 행	개 정
<p>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④ 삭제</p> <p>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u>익금불산입액의 전액</u>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1.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p>	<p>(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1.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p>

현행	개정
<p>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p> <p>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p> <p>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때</p> <p>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p> <p>⑥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p> <p>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p> <p>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p> <p>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p>

현행	개정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의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p> <p>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u>수도권의 지역이전법인</u>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u>당해</u>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p> <p>가. <u>당해</u>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u>차감</u>한 금액</p>	<p>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p> <p>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u>지방이전법인</u>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u>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u>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u>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u>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u>그</u>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p> <p>가. <u>해당</u>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u>뺀</u> 금액</p>

현 행	개 정
<p>나. <u>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u></p> <p>다. <u>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u></p> <p>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u>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u></p> <p>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u>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u></p> <p>④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u>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u></p> <p>1. 삭제</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u>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u></p> <p>⑤ <u>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u></p>	<p>나. <u>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u></p> <p>다. <u>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u></p> <p>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u>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u></p> <p>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u>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u></p> <p>④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u>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u></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u>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u></p> <p>⑤ <u>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u></p>

현행	개정
<p>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u>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u>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u>당해</u>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법인세를 감면받은 <u>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u>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u>당해</u>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u>당해</u>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u>수도권외의 지역으로</u>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u>수도권안에</u> 본사 또는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u>동일한</u>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4. 삭제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u>수도권안에</u>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p>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p> <p>⑥ <u>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u>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u>그</u> 사업을 <u>폐업</u>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u>제2항에 따라</u> 법인세를 감면받은 <u>지방이전법인</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u>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u>그</u> 사업을 <u>폐업</u>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u>수도권 밖으로</u>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u>제1항에</u>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u>같은</u>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u>수도권에</u>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p>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p> <p>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p>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현 행	개 정
<p>광속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 원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p> <p>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 제등)</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 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 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 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 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 지 아니한다.</p> <p>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 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p>	<p>을 포함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야 한다.</p> <p>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 제 등)</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 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 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 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 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 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 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 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 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 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 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p>

현 행	개 정
<p>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p> <p>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p> <p>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p>	<p>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p> <p>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p>

현행	개정
<p>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66조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p>	<p>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p>

현 행	개 정
<p>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p>	<p>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p>

현행	개정
<p>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하여는</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u>당해</u>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u>도시개발법</u>」 그 밖의 법률에 <u>의하여</u>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소득에 <u>한하여</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농업법인이 <u>당해</u>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u>당해</u> 토지를 양도하거나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당해</u>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 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u>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u>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해서는</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u>해당</u>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u>도시개발법</u>」 또는 그 밖의 법률에 <u>따라</u>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소득에 <u>대해서만</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농업법인이 <u>해당</u>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u>그</u> 토지를 양도하거나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그</u>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제1항에 <u>따라</u>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p> <p>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u>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u>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u>의하여</u>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u>농지의 대토</u>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하여는</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신설〉</p>	<p>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p> <p>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u>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u>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u>의하여</u>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u>농지로 대토(代土)함</u>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해서는</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u>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u> 주거지역·상업</p>

현행	개정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p> <p>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u>농업소득</u></p>	<p>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에 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p> <p>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u>농업소득</u></p>

현행	개정
<p>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p> <p>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p> <p>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p> <p>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p>	<p>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p> <p>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 제곱미터 이내의 것</p> <p>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p> <p>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p> <p>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p>

현 행	개 정
<p>경비로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p> <p>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p>	<p>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p> <p>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p>

현 행	개 정
<p>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p>② (생략)</p> <p>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p>	<p>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複式簿記)에 의한 기장(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p>

현 행	개 정
<p>출판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 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p> <p>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p> <p>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p>	<p>출판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p> <p>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p>

현행	개정
<p>금으로 출연하는 금액</p> <p>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사립학교법」에 <u>의한</u>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p> <p>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u>의한</u> 국립대학병원</p> <p>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u>의한</u> 서울대학교병원</p> <p>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u>의한</u> 서울대학교치과병원</p> <p>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u>의하여</u>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p> <p>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p> <p>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p> <p>3. <u>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u></p> <p>4. 독립기념관법에 <u>의하여</u>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u>특정연구기관 육성법</u>」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p> <p>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p> <p>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p> <p>라. 「과학기술기초법」에 <u>의하여</u>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p> <p>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u>의하여</u> 설립된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p> <p>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p> <p>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 제7</p>	<p>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p> <p>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사립학교법」에 <u>따른</u>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p> <p>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u>따른</u> 국립대학병원</p> <p>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u>따른</u> 서울대학교병원</p> <p>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u>따른</u> 서울대학교치과병원</p> <p>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u>따라</u>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p> <p>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p> <p>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p> <p>3. 「<u>사내근로복지기금법</u>」에 <u>따라</u> 기업이 <u>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u></p> <p>4. 「독립기념관법」에 <u>따라</u>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u>특정연구기관 육성법</u>」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p> <p>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u>따라</u>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p> <p>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p> <p>라. 「과학기술기초법」에 <u>따라</u>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p> <p>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u>따라</u> 설립된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p> <p>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p> <p>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 제7</p>

현 행	개 정
<p>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p> <p>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p> <p>7. <u>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u></p> <p>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p> <p>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p> <p>10.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p> <p>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p> <p>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p>	<p>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p> <p>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만 해당한다)</p> <p>7.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p> <p>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p> <p>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u>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u></p> <p>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p> <p>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p> <p>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p>

현 행	개 정
<p>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p> <p>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p> <p>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p> <p>14.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p> <p>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p> <p>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p> <p>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p>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p> <p>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개인인 경우</p> <p>(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p>

현행	개정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급에 산입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⑥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p>	<p>-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p> <p>2. 법인인 경우</p> <p>가. 제1항 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p> <p>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 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p> <p>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한다.</p> <p>1.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3년</p> <p>2. 제1호 외의 경우</p> <p>가. 개인인 경우 : 2년</p> <p>나. 법인인 경우 : 1년</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⑥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p>

현행	개정
<p>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p> <p>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 	<p>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p> <p>⑦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

현 행	개 정
<p>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p> <p>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p> <p>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p> <p>7. 제73조 제1항 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p> <p>8. 삭제</p> <p>9. 삭제</p> <p>10. 삭제</p> <p>11. 삭제</p> <p>12. 삭제</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p> <p>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p> <p>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p> <p>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p> <p>7. 제73조 제1항 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p> <p>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p> <p>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4호·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p>	<p>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p> <p>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p>
<p>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현행	개정
<p>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u>당해</u>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u>동법에 의한</u>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p> <p>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u>당해</u>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시</u>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u>사업시행의 인가</u>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u>당해</u>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u>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u>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p> <p>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p>	<p>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u>그</u>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u>같은 법에 따른</u>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p> <p>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u>사업시행인가</u>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u>그</u>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u>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p> <p>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p>

현행	개정
<p>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p>	<p>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p>
<p>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u>분</u>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법</u>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p>	<p>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u>부분에</u>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법으로</u>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p>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 	<p>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p>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

현행	개정
<p>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p>	<p>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p>

현 행	개 정
<p>특례)</p> <p>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p>	<p>특례)</p> <p>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u>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u>대해서</u>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p>

현 행	개 정
<p>추고 사업을 <u>영위하던</u>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하여는</u>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추고 사업을 <u>하던</u>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해서는</u>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u>제출과</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u>그 내국법인이</u>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p> <p>2.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p>

현행	개정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③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p> <p>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p> <p>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p>	<p>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p> <p>1.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현 행	개 정
<p>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개인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u>금액은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u>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u></p>	<p>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개인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u>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u>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현 행	개 정
<p>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p>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p>

현 행	개 정
<p>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u>기간에 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u>확정신고기한의</u>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u>기간에 균등액</u>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p>	<p>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u>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u>확정신고기한</u>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u>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u>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p>

현행	개정
<p>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p> <p>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u>균등액</u>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p>	<p>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p> <p>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u>균분한 금액</u>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p>

현 행	개 정
<p>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p>

현행	개정
<p>〈신설〉</p> <p>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p> <p>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p> <p>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p>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p> <p>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p>

현 행	개 정
<p>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p> <p>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u>불입계약기간만료</u>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u>불입계약기간만료</u>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p> <p>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p>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p> <p>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u>납입계약기간 만료</u>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u>납입계약기간 만료</u>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p> <p>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

현행	개정
<p>⑤ <u>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u></p> <p>⑥ 삭제</p> <p>⑦ 개인연금저축의 <u>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u> 등에 관하여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u>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u>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u>연금저축</u>”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u>당해 연도의 저축 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u> 다만, <u>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u></p> <p>③ <u>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u>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p>	<p>지하는 경우</p> <p>⑤ <u>제3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u></p> <p>⑦ 개인연금저축의 <u>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u> 등에 관하여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u>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u>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u>연금저축</u>”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u>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u> 다만, <u>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u></p> <p>③ <u>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u>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p>

현 행	개 정
<p>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u>저축불입계약기간</u>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u>저축불입계약기간</u>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u>지급받는</u> 경우에는 다음의 <u>산식에 의하여</u>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u>보아</u>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u>저축불입계약기간</u>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u>저축불입계약기간</u>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u>지급받는</u> 경우에는 다음의 <u>산식에 따라</u>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u>보아</u> 소득세를 부과한다.</p> <p>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u>지급받는</u>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p> <p>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u>사망 기타 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u>불입계약기간</u>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u>불입계약기간</u>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u>지급받는</u>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u>규정에 의한</u> 소득세 및 제5항의 <u>규정에 의한</u> 해지가산세를 <u>당해</u>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u>규정에 의하여</u>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u>기한내</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u>저축 납입계약기간</u>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u>저축 납입계약기간</u>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u>받는</u> 경우에는 다음의 <u>계산식에 따라</u>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u>보고</u>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u>저축 납입계약기간</u>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u>저축 납입계약기간</u>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u>받는</u> 경우에는 다음의 <u>계산식에 따라</u>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u>보고</u> 소득세를 부과한다.</p> <p>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u>받는</u>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u>납입한</u> 금액의 누계액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p> <p>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u>납입한</u>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u>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u>납입계약기간</u>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u>납입계약기간</u>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u>받는</u>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u>따른</u> 소득세 및 제5항에 <u>따른</u>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u>따라</u>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u>기한까지</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⑧ <u>연금저축</u>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p> <p>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u>연금저축</u>의 가입자가 <u>지급받는 환급금</u>을 한도로 한다.</p> <p>⑩ 삭 제</p> <p>⑪ 연금저축의 <u>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u>지급받을</u>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p> <p>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u>지급받은 환급</u></p>	<p>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p> <p>⑨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u>연금저축</u> 가입자가 <u>받는 환급금</u>을 한도로 한다.</p> <p>⑪ 연금저축의 <u>소득공제 및</u>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u>그</u> 소득을 <u>받을</u>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u>계산식</u>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p> <p>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u>받은 환급금</u> -</p>

현 행	개 정
<p>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u>불입한 금액의 누계액</u></p> <p>⑤ <u>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u>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u>기한 내에</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u>지급받는 환급금</u>을 한도로 한다.</p> <p>⑧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u>납입한 금액의 누계액</u></p> <p>⑤ <u>가입일부터 5년 이내</u>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u>기한까지</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p> <p>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u>2009년 12월 31일</u>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p> <p>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p>	<p>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u>2012년 12월 31일</u>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p> <p>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p>

현행	개정
<p>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p> <p>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p> <p>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p>	<p>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p> <p>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p> <p>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p> <p>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p> <p>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p>

현행	개정
<p>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 <p>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p>	<p>제52조 제4항과 제5항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 <p>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p> <p>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현행	개정
<p>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p> <p>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신설〉</p>	<p>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p> <p>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본다.</p> <p>⑧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p>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p> <p>①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p> <p>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p> <p>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p> <p>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p> <p>2.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p> <p>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p> <p>②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p>	<p>다.</p> <p>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농어민이 사망한 때</p> <p>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p> <p>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현행	개정
<p>다.</p> <p>④ 삭 제</p> <p>⑤ <u>고수의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p> <p>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p> <p>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p> <p>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p> <p>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p> <p>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p> <p>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p> <p>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p> <p>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p>	<p>〈삭 제〉</p>

현행	개정
<p>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p> <p>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p> <p>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 동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 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p>	

현행	개정
<p>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p> <p>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⑨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삭제</p> <p>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p>	<p>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p> <p>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p>

현 행	개 정
<p>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u>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u>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u>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p> <p>① <u>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② <u>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p>	<p>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u>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u>명의개서대행기관(名義改書代行機關)을 통하여</u>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
<p>다.</p> <p>③ 삭제</p> <p>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8조의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p>② 삭제</p> <p>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p>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p>

현행	개정
<p>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u>우리사주조합원</u>(이하 “<u>우리사주조합원</u>”이라 한다)이 <u>자사주</u>를 취득하기 위하여 <u>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u>(이하 “<u>우리사주조합</u>”이라 한다)에 <u>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u></p> <p>② <u>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u>에 의한 <u>우리사주조합기금</u>에서 발생하거나 <u>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u>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u>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③ <u>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u>에 따라 해당 법인 등의 <u>출연</u>,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증권시장 등에서 매입</u>으로 취득한 <u>자사주</u>를 <u>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u> 배정받는 때에는 <u>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④ <u>제3항의 규정</u>에 불구하고 <u>우리사주조합원</u>이 <u>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u> 배정받은 <u>자사주</u>가 해당법인이 <u>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u>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u>에 대하여는 <u>소득세를 부과한다.</u> 이 경우 「<u>근로자복지기본법</u>」 <u>제33조의 규정</u>에 따라 당초 배정된 <u>자사주</u>가 <u>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u>에 속하는 <u>근로소득</u>에서 <u>차감되어야 할 금액</u>이 있는 경우 해당<u>우리사주조합원</u>은 <u>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u>에 대한 <u>연말정산시 해당근로소득</u>에서 그 <u>금액을 차감</u>할 수 있다.</p> <p>⑤ <u>우리사주조합원</u>이 <u>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u> 배정받은 <u>자사주</u>를 <u>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u>에서 다음 각호의 <u>자사주</u>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u>과세인출주식</u>”이라 한다)에 대하여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u>에 따라 계산한 <u>금액</u>(이하 이 조에서 “<u>인출금</u>”</p>	<p>① 「<u>근로자복지기본법</u>」에 따른 <u>우리사주조합원</u>(이하 “<u>우리사주조합원</u>”이라 한다)이 <u>자사주(自社株)</u>를 취득하기 위하여 <u>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u>(이하 “<u>우리사주조합</u>”이라 한다)에 <u>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u></p> <p>② 「<u>근로자복지기본법</u>」 <u>제35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u>에서 발생하거나 <u>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u>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u>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③ <u>우리사주조합원</u>이 「<u>근로자복지기본법</u>」 <u>제33조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증권시장 등에서 매입</u>하여 취득한 <u>자사주</u>를 <u>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u> 배정받는 경우에는 <u>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④ <u>제3항에도 불구하고</u> <u>우리사주조합원</u>이 <u>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u> 배정받은 <u>자사주</u>가 해당 법인이 <u>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u>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u>에 대해서는 <u>소득세를 부과한다.</u> 이 경우 「<u>근로자복지기본법</u>」 <u>제33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u>가 <u>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u>에 속하는 <u>근로소득</u>에서 <u>빼야 할 금액</u>이 있는 경우 해당 <u>우리사주조합원</u>은 <u>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u>에 대한 <u>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u>에서 그 <u>금액을 뺄 수 있다.</u></p> <p>⑤ <u>우리사주조합원</u>이 <u>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u> 배정받은 <u>자사주</u>를 <u>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u>에서 다음 각 호의 <u>자사주</u>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u>과세인출주식</u>”이라 한다)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에 따라 계산한 <u>금액</u>(이하 이 조에서 “<u>인출금</u>”</p>

현행	개정
<p>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p> <p>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p> <p>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p> <p>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p> <p>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p> <p>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p> <p>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p>	<p>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p> <p>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p> <p>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주</p> <p>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p> <p>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p> <p>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p> <p>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p> <p>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p>

현행	개정
<p>다.</p> <p>⑨ <u>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u>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u> 3. <u>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u> <p>⑩ 「<u>농업협동조합법</u>」 제21조의2·제107조 제2항·제112조 제2항·제112조의10 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u>대하여는</u>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u>지급받은</u>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u> <p>⑨ <u>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u>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u> 3. <u>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u> <p>⑩ 「<u>농업협동조합법</u>」 제21조의2, 제107조 제2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10 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u>대해서는</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u>받은</u>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p>

현행	개정
<p>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p> <p>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u>1천8백만원</u>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p> <p>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u></p> <p>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p> <p>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p>	<p>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p> <p>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u>1천800만원</u> 이하일 것</p> <p>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u></p> <p>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p> <p>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p>

현 행	개 정
<p>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p> <p>3. <u>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u></p> <p>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u>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p> <p>① <u>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u> 2. <u>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u> 3. <u>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u> 4. <u>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u> <p>② <u>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u></p>	<p>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p> <p>3. <u>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u></p> <p>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u>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삭 제〉</p>

현행	개정
<p>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증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p>⑤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⑥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p>	

현행	개정
<p>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삭 제</p> <p>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⑪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p>	

현행	개정
<p>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 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⑫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 	<p>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

현 행	개 정
<p>니한다.</p> <p>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p> <p>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p> <p>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u>본문의</u>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u>세액과의 차액</u>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p> <p>① 다음 각호의 <u>1</u>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8조의6·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p>	<p>지 아니한다.</p> <p>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p> <p>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u>해당</u>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u>각 호 외의 부분</u>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u>세액의 차액</u>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 방법,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u>금융회사 등</u>(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제91조의10 및 제91조의13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p>

현행	개정
<p>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p> <p>2. 삭제</p> <p>3. <u>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u> <u>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u></p> <p>②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u>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u>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p> <p>⑤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u>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u>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u>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p>	<p>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녹색저축</p> <p>3. 「<u>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p> <p>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u>저축 납입금액</u>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u>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u>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p> <p>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u>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 저축자의 <u>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u>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p>

현 행	개 정
<p>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u>요구하여서는</u>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u>경우를</u> 제외한다.</p> <p>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p> <p>①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u>예탁금에 한하며</u>,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u>이자소득에 대하여</u>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u>소득에 대하여는</u>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u>소득에 대하여는</u>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u>이에 대하여는</u>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u>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u>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u>주민세를 부과</u>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2014년 1월 1일 <u>이후의</u>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u>대하여는</u>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u>불구하고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의</u> 세율을 적용하고, <u>이에 대하여는</u> <u>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u> 아</p>	<p>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u>요구해서는</u>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u>경우는</u> 제외한다.</p> <p>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p> <p>① 농민·어민 및 <u>그 밖에</u>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u>조합</u>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u>예탁금만</u>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u>이자소득에</u>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u>이자소득에</u>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u>그 이자소득은</u>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u>종합소득과세표준에</u>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u>지방소득세 소득분</u>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p> <p>② 2014년 1월 1일 <u>이후</u>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u>대해서는</u>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u>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u>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u>지방소득세 소득분</u>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
<p>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삭 제</p> <p>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p> <p>① 제87조의5 제5항, 제88조의4 제11항, 제89조의2 제1항, 제91조 제7항, 제91조의4 제4항, <u>제91조의6 제4항 및 제91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u>당해</u>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u>당해 각조에</u>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u>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u>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는</u>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p> <p>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p> <p>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u>지급받는</u>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u>대하여는</u></p>	<p>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p> <p>① 제87조의5 제5항, 제88조의4 제11항, 제89조의2 제1항, 제91조 제7항, 제91조의4 제4항, <u>제91조의6 제4항, 제91조의8 제2항 및 제91조의11 제3항에 따라</u>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u>해당</u>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u>각 조에</u>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p> <p>② <u>제1항을 적용할 때</u>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u>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u>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p> <p>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p> <p>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u>받는</u>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u>대해서는</u></p>

현 행	개 정
<p>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p>② 삭 제</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u>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u>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u>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u> : 해당 주식 	<p>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p>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에 <u>따른</u>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u>따라</u> 신주(新株)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u>주권이 교체된</u> 경우 : <u>구주식(舊株式)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u>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u>따른</u> <u>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u> : <u>해당 주식의 취득일</u>

현행	개정
<p>의 취득일</p> <p>④ <u>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⑤ <u>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⑥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u></p> <p>⑦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u>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u></p>	<p>④ <u>주식 보유기간에 같은 종류 주식의 보유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u></p> <p>⑤ <u>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⑥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u></p> <p>⑦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p>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p> <p>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p> <p>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p> <p>4. 삭제</p> <p>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p> <p>④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p>	

현행	개정
<p>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p> <p>⑥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p> <p>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p>	

현 행	개 정
<p>보지 아니한다.</p> <p>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p> <p>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p>	<p>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p> <p>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p>

현 행	개 정
<p>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p> <p>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p> <p>②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p>	<p>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p>

현 행	개 정
<p>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p> <p>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p>	<p>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p> <p>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p>

현행	개정
<p>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u>지급받는</u>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②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u>지급받는</u>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u>경과하여</u>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u>받는</u>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②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가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u>받는</u>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한다.</p> <p>③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u>지나</u>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p>④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u>대통령령</u>의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u>계산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 비율의 <u>계산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u>대하여는</u>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 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계산식</u>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u>대해서는</u>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p>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p>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p> <p>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p>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

현 행	개 정
<p>100분의 5</p> <p>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u>불입</u>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u>대하여</u>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u>경과</u>한 후 발생한 소득에 <u>대하여</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u>불입</u>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u>불입</u>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u>불입</u>한 금액은 제외한다) : 1천200만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u>불입</u>한 금액 : 1천200만원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u>불입</u>한 금액 : 1천200만원 <p>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p> <p>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 	<p>100분의 5</p> <p>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u>납입</u>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u>대해</u>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u>지난</u> 후 발생한 소득에 <u>대해</u>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u>납입</u>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u>납입</u>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u>납입</u>한 금액은 제외한다) : 1천200만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u>납입</u>한 금액 : 1천200만원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u>납입</u>한 금액 : 1천200만원 <p>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p> <p>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

현행	개정
<p>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u>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u></p> <p>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p> <p>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p> <p>다.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p> <p>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u>받고자</u>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u>하는</u>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u>기한 내에</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u>경우에는</u>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 제1항 제1호를 <u>적용함에 있어서</u>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p>	<p>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u>각 호 의 의 부분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u></p> <p>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u>납입액</u>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p> <p>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u>납입액</u>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p> <p>다.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u>납입액</u>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p> <p>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u>받으려는</u>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u>할</u>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u>납입액</u>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u>내용</u>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u>기한까지</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u>저축의 경우에는</u>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 제1항 제1호를 <u>적용하는 경우</u>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p>

현 행	개 정
<p>입한 것으로 본다.</p> <p>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p> <p>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u>불입한</u>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u>대하여는</u>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u>경과한</u> 후 발생한 소득에 <u>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u>이상</u>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u>한한다</u>)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u>1인당</u>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u>불입</u>할 것 <p>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p>	<p>입한 것으로 본다.</p> <p>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p> <p>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u>납입한</u>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u>대해서는</u>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u>지난</u> 후 발생한 소득에 <u>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u>이상</u>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만 <u>해당한다</u>)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u>1명당</u>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u>납입</u>할 것 <p>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p>

현행	개정
<p>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u>내역</u>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u>기한 내</u>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1호를 <u>적용함에 있어서</u>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u>내용</u>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u>기한까지</u>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1호를 <u>적용하는 경우</u>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u>납입</u>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u>종합소득과세표준</u>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u>지급받는</u>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u>종합소득과세표준</u>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u>받는</u>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p>	<p>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p>

현행	개정
<p>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세액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p>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세액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p>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1조의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p>

면 행	개 정
	<p>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녹색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3. 1명당 납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p>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이하 이 조에서 “녹색예금”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이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3.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p>③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p>

현행	개정
	<p> <u>춘 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채권”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 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할 것) 2.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3.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p> <u>④ 녹색투자신탁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p> <p> <u>⑤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p>

현행	개정
<p>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p> <p>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p>	<p>⑥ <u>녹색투자신탁등과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p> <p>⑦ <u>저축취급기관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p> <p>⑧ <u>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투자신탁등,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녹색채권의 발행법인은 해당 녹색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p> <p>⑨ <u>녹색저축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에 대한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p> <p>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u>해당</u> 시설의 취득금액(<u>해당</u> 시설에</p>

현행	개정
<p>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에 한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u>인원을 제외한다</u>)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u>의한</u>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시설 <p>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u>기타의</u>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u>기타의</u>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의</u>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u>당해</u>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u>당해</u>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시에</u> <u>당해</u>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u>당해</u>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u>규정에 의하여</u>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인원을</u>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p>떨린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로 한정한다</u>)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u>인원은</u>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u>따른</u>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시설 <p>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u>그 밖의</u>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u>그 밖의</u>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을</u>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u>따라</u>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u>해당</u>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u>그</u>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u>그</u>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u>해당</u>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u>따라</u>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인원은</u>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 행	개 정
<p>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p>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p>	<p>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p>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p>

현 행	개 정
<p>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p> <p>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p> <p>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p> <p>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p> <p>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p> <p>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p>	<p>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p> <p>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p> <p>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p> <p>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p> <p>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p> <p>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p>

현 행	개 정
<p>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p>	<p>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p> <p>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p>

현행	개정
<p>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p>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p> <p>④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p>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p>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p> <p>④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현행	개정
<p>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u>소재하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하여는</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u>차감한다</u>.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p>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u>있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해서는</u>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u>뺀다</u>.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현행	개정
<p>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p> <p>2.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중에 소실·<u>도과</u>·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p> <p>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p> <p>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p> <p>2.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중에 소실·<u>불과</u>·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p> <p>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p> <p>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현 행	개 정
<p>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 	<p>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p> <p>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

현행	개정
<p>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p> <p>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p> <p>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p>	<p>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p> <p>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p> <p>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p> <p>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p> <p>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p> <p>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p> <p>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p> <p>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p> <p>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p> <p>(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p> <p>(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p> <p>(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p> <p>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p>	<p>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p> <p>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p> <p>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p> <p>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p> <p>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p> <p>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p> <p>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p>

현 행	개 정
<p>(「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p> <p>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p> <p> (1) 수도권지역</p> <p>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p> <p>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p> <p>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3. <u>삭 제</u></p> <p> ② <u>삭 제</u></p> <p>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결한 읍·면·시에 <u>소재하는</u> 경우에는 <u>제1항의</u>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④ 1세대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u>제1항의</u> 규정을 적용한다.</p> <p> ⑤ <u>제4항의</u>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p>	<p>「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p> <p>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u>고려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p> <p> 1) 수도권지역</p> <p>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p> <p>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p> <p>라. 주택 및 이에 <u>떨린</u>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결한 읍·면·시에 <u>있는</u> 경우에는 <u>제1항을</u>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④ 1세대가 <u>제1항에</u>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u>제1항을</u> 적용한다.</p> <p> ⑤ <u>제4항에</u>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p>

현행	개정
<p>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시</u>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u>대통령령이 정하는</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u>보유기간</u>의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p> <p>〈<u>신설</u>〉</p>	<p>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u>보유기간</u>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p> <p>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p> <p>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채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p> <p>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p>

면 행	개 정
	<p>만인 사람</p> <p>2.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p> <p>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p> <p>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p> <p>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 87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p>

현행	개정
<p>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p> <p>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p>	<p>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할 수 있다.</p> <p>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할 수 없다.</p> <p>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순으로 한다.</p> <p>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p> <p>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p>

현 행	개 정
<p>을 결정·환급한다.</p> <p>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p> <p>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u>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u>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u> 18세 미만일 것. 다만,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u>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u> 거주자를 포함한 <u>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u>(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u>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p>	<p>결정·환급한다.</p> <p>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p> <p>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u>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u>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u> 18세 미만일 것.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u>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u> 거주자를 포함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u>(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u>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p>

현행	개정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현행	개정																								
<p>으로 본다.</p> <p>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p> <p>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p> <p>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83 846 688 1131"> <thead> <tr> <th>호별</th> <th>총급여액</th> <th>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1</td> <td>800만원 미만</td> <td>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td> </tr> <tr> <td>2</td> <td>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td> <td>120만원</td> </tr> <tr> <td>3</td> <td>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 <td>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p>본다.</p> <p>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p> <p>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p> <p>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725 922 1230 1127"> <thead> <tr> <th>호별</th> <th>총급여액</th> <th>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1</td> <td>800만원 미만</td> <td>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td> </tr> <tr> <td>2</td> <td>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td> <td>120만원</td> </tr> <tr> <td>3</td> <td>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 <td>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현행	개정
<p>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p> <p>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p> <p>④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p> <p>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④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다.</p> <p>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p> <p>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p> <p>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p> <p>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p>	<p>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p>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p> <p>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p>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p>

현행	개정
<p>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p> <p>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p> <p>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p>	<p>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p> <p>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p>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p>

현행	개정
<p>한받는 자에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u> 한다.</p> <p>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p> <p>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p> <p>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p> <p>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u> 정하는 이자율</p>	<p>자에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u> 한다.</p> <p>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p>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p> <p>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p> <p>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이자율</p>
<p>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p>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u>서류와</u>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현행	개정
<p>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p> <p>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p>	<p>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p> <p>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p>

현 행	개 정
<p>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u>대하여</u>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p>	<p>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u>대해서는</u>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 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업기업에 <u>대하여</u>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p>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 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업기업에 <u>대해서는</u>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현행	개정
<p>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u>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u>”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u>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u>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u>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u>3년간 균등액 이상</u> 납부하여야 한다.</p>	<p>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u>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u>”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u>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u>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u>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u>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u>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p> <p>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u>종료하는</u>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p>	<p>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p> <p>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u>끝나는</u>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p>
<p>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p> <p>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u>수동적동업자</u>”라 한다)에게는 <u>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u></p>	<p>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p> <p>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u>수동적동업자</u>”라 한다)에게는 <u>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u></p>

현 행	개 정
<p>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p> <p>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p> <p>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p>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p>	<p>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p> <p>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p> <p>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p>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p>

현행	개정
<p>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p> <p>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p> <p>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p> <p>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p> <p>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한다.</p> <p>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p> <p>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p>	<p>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p> <p>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p> <p>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p> <p>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p> <p>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p> <p>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p> <p>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p>

현 행	개 정
<p>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u>대하여는</u>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p> <p>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u>계산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p> <p>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u>대하여는</u>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수동적 동업자 외의 <u>동업자</u>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p>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p>	<p>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u>대해서는</u>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p> <p>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u>계산방법과</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p> <p>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u>대해서는</u>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수동적 동업자 외의 <u>동업자</u>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p>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p>

현행	개정
<p>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p> <p>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p> <p>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인 경우: 	<p>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p> <p>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p> <p>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인 경우:

현 행	개 정
<p>동업기업이 제1항 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p> <p>⑥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p> <p>⑦ 제1항 제1호, 제3항 및 제5항 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p> <p>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p> <p>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p>	<p>동업기업이 제1항 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p> <p>⑥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p> <p>⑦ 제1항 제1호, 제3항 및 제5항 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p> <p>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p> <p>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 ----- ----- -----</p>

현 행	개 정
<p>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p> <p>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은 급여만 있는 자</p> <p>2. 3.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p> <p>⑥·⑦ (생략)</p> <p>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p> <p>1. 2. (생략)</p> <p>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p> <p>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p> <p>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p> <p>-----</p> <p>2.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p> <p>-----.</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p> <p>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p>

현 행	개 정
<p>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u>2009년 12월 31일</u>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p>	<p>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u>2010년 12월 31일</u>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p>
<p>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립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립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u>2009년 12월 31일까지</u>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p> <p>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립(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립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u>2012년 12월 31일까지</u>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p> <p>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 제1항의 	<p>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p> <p>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

현행	개정
<p>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p> <p>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u>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u>종료하는</u>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u>당해</u> 금액이 <u>부의 수인</u>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p>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u>발생한</u>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p>	<p>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p> <p>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u>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u>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u>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u>끝나는</u>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u>그</u> 금액이 <u>음수이면</u> 영으로 본다. <p>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u>발생할</u>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p>

현 행	개 정
<p>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p>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4(전자장의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p> <p>① <u>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u></p> <p>② <u>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u>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등”</u></p>	<p>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p>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4(전자장의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p> <p>①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78조 제1항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u>증권시장에서</u>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u>소득세법</u>」 제94조를 적용한다.</p> <p>②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u>증권시장에서</u>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u>증권등거래세법</u>」 제8조 및 「<u>농어촌특별세법</u>」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p> <p>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u>소득세법</u>」 제164조, 제164조의2 및 「<u>법인세법</u>」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u></p>

현행	개정
<p>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p>	<p>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u>6월 이상 계속하여</u> 보유하고 있을 것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p> <p>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登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u>6개월 이상 계속하여</u> 보유하고 있을 것 <p>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p> <p>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登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p>

현행	개정
<p>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을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p> <p>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p>	<p>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을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p> <p>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p>

현행	개정
<p>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 제3항·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p> <p>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참가계약(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국법인(그 내국법인의 도급업</p>

현행	개정
	<p>자인 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설치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참가준비금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참가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에 따라 상계한 금액과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박람회 참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p>④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참가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현행	개정
<p>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p> <p>① 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u>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u>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p> <p>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p>	<p>1. <u>박람회참가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u></p> <p>2. <u>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u></p> <p>3. <u>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⑤ <u>제3항 제2호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차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⑥ <u>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p> <p>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u>경영</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법인세법</u>」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u>규정</u>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u>계산식</u>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p> <p>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p>

현행	개정
<p>를</p> <p>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제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p>	<p>를</p> <p>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제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p>

현 행	개 정
<p>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p> <p>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p> <p>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p> <p>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p>	<p>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p> <p>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p>

현 행	개 정
<p>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text{압축기장 총당금} \times \frac{\text{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text{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p>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u>기한 내</u>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u>대하여</u>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text{압축기장 총당금} \times \frac{\text{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text{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p>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u>기한까지</u>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u>대해서는</u>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u>경우는</u>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p> <p>① <u>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u></p>

현행	개정
<p>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p>	<p>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p>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p>

현행	개정
<p>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u>과세에 한하여</u>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p> <p>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u>당해</u>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u>과세의 경우에만</u>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p> <p>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u>그</u>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제조업을 <u>영위</u>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u>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u>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p>	<p>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제조업을 <u>경영</u>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u>100분의 3에</u>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u>소득세만</u>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p>

현 행	개 정
<p>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p> <p>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차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p> <p>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차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p>	<p>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p> <p>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차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p> <p>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차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차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u>경우에 한한다.</u>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u>지급받아</u>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주주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u>경우로 한정한다.</u>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u>받아</u>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주주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p>

현 행	개 정
<p>산입할 수 있다.</p> <p>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p> <p>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u>균등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의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u>차감한</u>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 	<p>산입할 수 있다.</p> <p>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p> <p>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u>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u>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을 계산할 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u>뺀</u>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

현행	개정
<p>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p> <p>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p> <p>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u>안에 소재하는</u>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p> <p>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p> <p>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u>실시계획승인일</u>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하여는</u>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p>	<p>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p> <p>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p> <p>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u>있는</u>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p> <p>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p> <p>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u>실시계획승인일</u>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u>대해서는</u>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p>

현 행	개 정
<p>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간접국세</p> <p>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p>	<p>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p>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p> <p>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을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간접국세</p> <p>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p>

현행	개정
<p>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p>다. 삭제</p> <p>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p> <p>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p> <p>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 	<p>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p> <p>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

현 행	개 정
<p>령이 정하는 것</p> <p>5.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p> <p>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p>	<p>령으로 정하는 것</p> <p>5.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p> <p>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p>

현행	개정
<p>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p> <p>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p> <p>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목외의 <u>부분의 규정에 의한</u>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u>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u>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p> <p>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p> <p>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p>	<p>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p> <p>나.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p> <p>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u>부분에 따른</u>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u>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u>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p> <p>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p> <p>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u>기자재만 해당한다</u>)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u>해당</u> 농어민에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제1호 외의 경우에는 <u>해당</u>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p>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p>

현행	개정
<p>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u>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연연초생산협동조합</u> <p>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u>허위</u>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p>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p>	<p>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합 2.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합 3. 「<u>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u>」에 따른 연연초생산협동조합 <p>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u>거짓이나</u>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p>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p>

현행	개정
<p>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p> <p>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⑦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p>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p> <p>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p>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u>도서</u>로서 지식경제부장관(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p> <p>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u>당해</u>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u>당해</u>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료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4.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u>당해</u> 주택의 건설용역(<u>대통령령</u>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p> <p>4의2.·4의3. (생략)</p> <p>4의4. 삭제</p> <p>5. 삭제</p> <p>6.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것</p> <p>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p>	<p>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u>도서(島嶼)</u>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p> <p>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u>해당</u>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u>같은 법</u>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u>해당</u>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4.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p> <p>4의2.·4의3. (현행과 같음)</p> <p>6.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p> <p>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p>

현행	개정
<p>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p> <p>8. <u>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u>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p> <p>9.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u></p> <p>10. <u>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u></p> <p>11.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연탄 2. 삭제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p>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p> <p>8. <u>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u>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p> <p>9.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p> <p>10. 「<u>관세법</u>」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p> <p>11.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연탄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현 행	개 정
<p>9. 제10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p> <p>10. ~ 12. (생략)</p> <p>③ 삭제</p> <p>④ 삭제</p> <p>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9.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10. ~ 12. (현행과 같음)</p> <p>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u>그 밖의</u>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업에 <u>대해서는</u>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u>대해서는</u>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u>보세구역에서</u>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u>보세구역에서</u> 반출되는 것에 <u>대해서는</u>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현행	개정
<p>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p> <p>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u>그 면세되는</u>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u>어업경영</u>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u>이농</u>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u>교부</u>받아야 한다.</p> <p>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p>	<p>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u>「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u>)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p> <p>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u>면제되는</u>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u>어업경영</u>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u>이농(離農)</u>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u>발급</u>받아야 한다.</p> <p>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p>

현 행	개 정
<p>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u>농·어업용 시설</u>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p> <p>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u>농·어민</u>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립 또는 <u>영어규모</u>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u>교부</u>하여야 한다.</p> <p>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류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u>필요한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u>농·어민</u>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u>농·어민</u>등에 대한 면세유의 <u>공급명세</u>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p> <p>⑨ 관할 세무서장은 <u>농·어민</u>등이 제4항에 따라 <u>교부</u>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u>농·임·어업용</u>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⑩ <u>농·어민</u>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농·어민</u>(그 <u>농·</u></p>	<p>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u>농어업용 시설</u>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p> <p>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u>농어민</u>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립 또는 <u>어업경영 규모</u>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u>발급</u>하여야 한다.</p> <p>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류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u>필요하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u>농어민</u>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u>농어민</u>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u>명세</u>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p> <p>⑨ 관할 세무서장은 <u>농어민</u>등이 제4항에 따라 <u>발급</u>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u>농업·임업·어업용</u>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⑩ <u>농어민</u>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농어민</u>(그 <u>농어민</u></p>

현행	개정
<p>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p>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p>	<p>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p>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p>

현행	개정
<p>한 금액을 추징한다.</p> <p>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u>교부받거나 농·어민</u>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의 합계액</u></p> <p>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p> <p>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의 합계액</u></p> <p>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의 합계액</u>.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p>	<p>추징한다.</p> <p>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u>발급받거나 농어민</u>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을 합친 금액</u></p> <p>가. <u>발급</u>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p> <p>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을 합친 금액</u></p> <p>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을 합친 금액</u>.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p> <p>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p>

현행	개정
<p>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p> <p>⑯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p> <p>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⑱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류 관리</p>	<p>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p>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p> <p>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p> <p>「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p>

현행	개정
<p>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⑱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⑳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㉑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p> <p>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p>	<p>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p>

현행	개정
<p>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u>금융기관</u>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p> <p>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u>대하여</u>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③ <u>제1항</u>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u>대하여</u>는 다음 <u>각호의 1</u>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p> <p>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u>제12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u>당해</u>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u>간주하여</u>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u>당해</u>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u>당해</u> 금지금을 <u>구입하는</u>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u>대하여</u>는 부가가치세법 <u>제17조</u>의 규정에 <u>의하여</u>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u>당해</u> 사업자가</p>	<p>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u>금융기관</u>에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p>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p> <p>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u>대해서는</u>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③ <u>제1항</u>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u>대해서는</u>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의</u>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p> <p>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u>제12조</u>를 준용한다.</p> <p>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u>해당</u>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u>보아</u>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u>그</u>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u>해당</u> 금지금을 <u>구입할</u>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u>대해서는</u> 「부가가치세법」 <u>제17조</u>에 <u>따라</u>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u>해당</u> 사업자가</p>

현행	개정
<p>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p>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u>의하여</u>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의하여</u>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p>	<p>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p>⑤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u>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u>따라</u>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u>발급하여야</u>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p>

현행	개정
<p>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면세금지금의 <u>거래내역</u>(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u>추천내역</u>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u>거래내역·수입내역</u> 및 <u>면세추천내역</u>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u>연도의</u>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⑧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u>의하여</u>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u>의하여</u>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항 제1호의</u> <u>규정에</u> <u>의하여</u>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u>당해</u>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u>제1항 제2호의</u> <u>규정에</u> <u>의하여</u>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u>당해</u>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u>의하여</u> 차입한 금지금을 <u>상환함에 있어서</u>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u>제4항의</u> <u>규정에</u> <u>의하여</u>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p>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면세금지금의 <u>거래내용</u>(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u>추천내용</u>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u>거래내용, 수입내용</u> 및 <u>면세추천내용</u>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u>해의</u>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u>따라</u>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u>따라</u>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1항 제1호에</u> <u>따라</u>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u>해당</u>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u>제1항 제2호에</u> <u>따라</u>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해당</u>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u>의하여</u> 차입한 금지금을 <u>상환할 때</u> 차입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u>제4항에</u> <u>따라</u>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

현행	개정
<p>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p> <p>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p> <p>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p>	<p>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4.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5.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p> <p>가. 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록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p> <p>나.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및 추천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p>

현행	개정
<p>5)에 상당한 금액</p> <p>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⑫ 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 제5항에서 “금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p> <p>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당한 금액</p> <p>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⑪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 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p> <p>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p>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u>공급받은</u>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p>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u>교부받은</u>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p>	<p>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u>공급받았을</u>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p>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u>발급받은</u> 세금계산서에 <u>적힌</u>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p>

현행	개정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p> <p>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p>	<p>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p> <p>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p>

현 행	개 정
<p>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u>확정신고시</u> 정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u>과세표준 신고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u>제조반출내역</u>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p> <p>①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u>대하여는</u>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u>종료하는</u>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u>의한</u>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p>	<p>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u>확정신고를 할 때</u> 정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u>계산한</u>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u>과세표준신고를 할 때</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u>제조반출내용</u>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p> <p>①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u>대해서는</u>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u>이전에 끝나는</u>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u>따른</u>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u>제1항에</u>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p>

현행	개정
<p>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u>제2항의 규정</u>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u>규정</u>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의 합계액</u>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times \text{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times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u>대하여는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u>영세율</u>을 적용하거나 <u>당해</u>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u>대하여는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u>당해</u>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 	<p>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u>제2항</u>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u>금액을 합친 금액</u>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u>계산식</u>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times \text{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times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u>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u>영세율(零稅率)</u>을 적용하거나 <u>해당</u>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u>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u>해당</u>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u>제2항</u>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

현행	개정
<p>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⑤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u>기타 대통령령</u>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p>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p>	<p>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u>그 밖에 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p>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u>당해</u>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u>경우에 한하여</u> 적용한다.</p> <p>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p> <p>① <u>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u>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u>기타 대통령령</u>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u>중고품을</u>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u>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u>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u>중고품에 대하여는</u>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u>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u>확정신고시</u>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u>교부받고</u>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p>	<p>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u>해당</u>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u>경우에만</u> 적용한다.</p> <p>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p> <p>① <u>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u>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u>중고자동차를</u>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u>확정신고</u>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u>뺀</u>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u>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u>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u>같은 법 제19조</u>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p>

현 행	개 정
<p>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p>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p> <p>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p>	<p>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p>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p> <p>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p>

현행	개정
<p>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p> <p>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p> <p>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면제)</p> <p>①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3. 삭 제 4. 삭 제 	<p>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p> <p>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p> <p>①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

현행	개정
<p>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p> <p>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p>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p>	<p>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p> <p>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p>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p>

현행	개정
<p>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u>대하여만</u>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p> <p>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p> <p>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u>환급받거나</u>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p> <p>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u>신청하여</u>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p>	<p>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에 <u>대해서만</u>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p> <p>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p> <p>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u>환급받으려는</u>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p> <p>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u>그</u>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u>세액 환급을 신청하여</u>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u>환급받거나 그</u>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p>

현행	개정
<p>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p> <p>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p>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p> <p>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현 행	개 정
<p>① 국세청장은 <u>환급대상자의</u>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u>요청받은</u> 관계 행정기관 등은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u> 한다.</p> <p>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p> <p>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p> <p>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u>신청하여</u>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p>	<p>① 국세청장은 <u>환급대상자</u>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u>요청을 받은</u> 관계 행정기관 등은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u> 한다.</p> <p>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p> <p>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p> <p>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u>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u>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p>

현행	개정
<p>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p>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p>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현 행	개 정
<p>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u>소재하는</u>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u>경우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u>소재하는</u>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u>소재하는</u>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u>소재하는</u> 골프장으로 본다.</p> <p>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p> <p>①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u>제111조의</u>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u>당해</u>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p> <p>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u>제111조의</u>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③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p>	<p>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u>있는</u>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u>경우만 해당한다</u>)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u>있는</u>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u>있는</u>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u>있는</u> 골프장으로 본다.</p> <p>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p> <p>①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u>제111조에</u>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u>해당</u>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p> <p>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u>제111조에</u>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③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p>

현행	개정
<p>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p> <p>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p> <p>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5조(주세의 면제)</p> <p>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u>대하여는</u> 주세를 면제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주세의 면제절차는</p>	<p>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p> <p>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p> <p>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u>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해당</u>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에 따라</u>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u>환급하거나</u>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u>제1항에 따른</u>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5조(주세의 면제)</p> <p>① 「관광진흥법」에 <u>따른</u>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u>경영하는</u> 자가 <u>해당</u>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u>대해서는</u> 주세를 면제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u>환급하거나</u>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u>제1항에 따른</u>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p>

현 행	개 정
<p>주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6조(인지세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 제 2. 사 제 3. 사 제 4. 사 제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등 농가의 경영 	<p>법」 제31조를 준용한다.</p> <p>제116조(인지세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현행	개정
<p>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 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p> <p>8. 삭제</p> <p>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p> <p>10. 삭제</p> <p>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p> <p>12. 삭제</p> <p>13. 삭제</p> <p>14. 삭제</p> <p>15. 삭제</p> <p>16. 삭제</p> <p>17. 삭제</p> <p>18. 삭제</p> <p>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등</p> <p>20. ~ 22. (생략)</p> <p>②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p>	<p>·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p> <p>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p> <p>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p> <p>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p> <p>20. ~ 2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p>

현 행	개 정
<p>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p> <p>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p>2의2. 삭 제</p> <p>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3.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p> <p>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p> <p>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p>	<p>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p> <p>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p>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
<p>경우</p> <p>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u>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u></p> <p>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p> <p>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p>	<p>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p> <p>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p> <p>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p><u>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u></p> <p>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p> <p>8. 예금보험공사 또는 <u>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u>(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u>인한 불실금융기관</u></p> <p>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 2의 규정에 <u>인한 불실우려금융기관</u></p> <p>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u>인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u></p> <p>9.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u>인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u>(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불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p>	<p>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p> <p>8. 예금보험공사 또는 「<u>예금자보호법</u>」 제36조의3에 <u>따른 정리금융기관</u>(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u>예금자보호법</u>」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u>같은 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u>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u> 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가. 「<u>예금자보호법</u>」 제2조 제5호에 <u>따른 부실금융기관</u></p> <p>나. 「<u>예금자보호법</u>」 제2조 제5호의 2에 <u>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u></p> <p>다. 「<u>예금자보호법</u>」 제38조에 <u>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u></p> <p>9. 「<u>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u>」 에 <u>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u> (이하 “<u>한국자산관리공사</u>”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p>

현행	개정
<p>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p> <p>11. 삭제</p> <p>12. 삭제</p> <p>13. (생략)</p> <p>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 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p> <p>15.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불도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불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p> <p>16. (생략)</p> <p>17. 삭제</p> <p>18.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p> <p>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p>	<p>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삭제〉</p> <p>13. (현행과 같음)</p> <p>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 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p> <p>〈삭제〉</p> <p>1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p>

현 행	개 정
<p>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19의3.·20. (생략) 〈신설〉</p> <p>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1.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p> <p>2.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9년 12월 31일</p> <p>3. 삭제</p> <p>4. 제1항 제16호 : 2009년 12월 31일</p> <p>③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18조(관세의 경감)</p>	<p>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 <p>19의3.·20. (현행과 같음)</p> <p>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p> <p>1.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3·제16호 : 2012년 12월 31일</p> <p>〈삭제〉</p> <p>〈삭제〉</p> <p>③ 제1항 제15호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18조(관세의 경감)</p>

현 행	개 정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u>대하여</u>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p> <p>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u>2009년 12월 31일</u> 까지 수입하는 물품</p> <p>2. 삭 제</p> <p>3.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p> <p>4. 삭 제</p> <p>5. 삭 제</p> <p>6. 삭 제</p> <p>7. 삭 제</p> <p>8. 삭 제</p> <p>9. 삭 제</p> <p>10.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u>한한다</u>)</p> <p>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u>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u>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p> <p>12. · 13. (생 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u>기간내</u>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u>대해서는</u>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p> <p>1.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u>2011년 12월 31일</u>까지 수입하는 물품</p> <p>3. <u>2011년 12월 31일까지</u>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u>그 기자재</u>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p> <p>10.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u>해당한다</u>)</p> <p>11. ----- ----- <u>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u>-----</p> <p>12. · 13.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u>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u>기간</u>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p>

현 행	개 정
<p>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장 지방세</p>	<p>제4장 지방세</p>
<p>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생략)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삭제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p>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

현행	개정
<p>등기</p> <p>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u>〈단서 신설〉</u></p> <p>8. 삭 제</p> <p>9. 삭 제</p> <p>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u>〈단서 신설〉</u></p> <p>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p> <p>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불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p> <p>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p>	<p>한 등기</p> <p>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11.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p> <p>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불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p> <p>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p>

현 행	개 정
<p>200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p> <p>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p> <p>14. 삭 제</p> <p>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p> <p>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u>동법 제23조의 규정에</u> 따라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p> <p>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p> <p>16의2. 삭 제</p> <p>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u>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u>)에 관한 등기</p> <p>18. 삭 제</p> <p>19. 금융지주회사가 <u>제38조에</u>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p> <p>20. <u>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약정채결자산을 동법 동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u></p>	<p>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p> <p>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p> <p>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u>제12조에 따라</u>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p> <p>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u>같은 법 제23조에</u> 따라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p> <p>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p> <p>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u>)에 관한 등기</p> <p>19. 금융지주회사가 <u>제38조의2에</u>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p> <p><삭 제></p>

현행	개정
<p>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p> <p>가. <u>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u></p> <p>나. <u>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u></p> <p>21. <u>삭제</u></p> <p>22. <u>삭제</u></p> <p>23. <u>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u></p> <p>24. <u>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u></p> <p>25. <u>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u></p> <p>26. <u>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u></p> <p>27. <u>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u></p> <p>28. <u>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효율적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u></p>	<p>23. 「<u>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u></p> <p>24.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합, 「<u>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u></p> <p>25. 「<u>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u></p> <p>26.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합 및 「<u>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u></p> <p>27. 「<u>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u></p> <p>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u>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6조</p>

현 행	개 정
<p>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p> <p>2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삭 제</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부터 2년 이내에 해당</p>	<p>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p> <p><삭 제></p> <p>30.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31.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p> <p>3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부터 2년 이내에 해당</p>

현행	개정
<p>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u>영위하기</u>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p> <p>2. 창업중소기업의 <u>법인설립</u>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p> <p>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u>법인설립</u>의 등기</p> <p>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u>사업양수도</u>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u>대하여는</u>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u>당해</u> 사업을 <u>폐지</u>하거나 <u>당해</u>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u>감면받은</u> 세액을 추징한다.</p> <p>⑤ <u>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u>을 위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u>하기</u>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p> <p>2. 창업중소기업의 <u>법인설립</u>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p> <p>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u>법인설립</u> 등기</p> <p>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u>사업양수·양도</u>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u>대해서는</u>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u>폐업</u>하거나 <u>해당</u>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u>감면받은</u> 세액을 추징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u>100분의 50</u>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 <p>⑦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u>부동산투자회사</u>·「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u>100분의 30</u>(제3호의 경우에는 <u>100분의 50</u>)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 <p>〈삭 제〉</p> <p>⑦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u>부동산투자회사</u>(「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
<p>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 3. 삭제 4.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서 신설> 7. 삭제 8. 삭제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단서 신설> 10.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 	<p>다.</p> <p>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삭제 4.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삭제 8. 삭제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

현 행	개 정
<p>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u>명령에 한한다</u>)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p>	<p>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u>명령만 해당한다</u>)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p>
<p>12. 유동화전문회사가 <u>제119조 제1항 제3호</u>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p>	<p>12. 유동화전문회사가 <u>제119조 제1항 제3호</u>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p>
<p>13. 삭 제</p>	
<p>14. 삭 제</p>	
<p>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u>제119조 제1항 제16호</u>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p>	<p>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u>제119조 제1항 제16호</u>에 따라 취득한 주택</p>
<p>15의2. 삭 제</p>	
<p>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u>제119조 제1항 제17호</u>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p>	<p>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u>제119조 제1항 제17호</u>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p>
<p>17. 삭 제</p>	
<p>18. 삭 제</p>	
<p>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u>제119조 제1항 제23호</u>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p>	<p>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u>제119조 제1항 제23호</u>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p>
<p>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u>명령에 한한다</u>)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p>	<p>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u>명령만 해당한다</u>)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p>
<p>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u>제119조 제1항 제25호</u>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p>	<p>2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u>제119조 제1항 제25호</u>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p>
<p>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u>명령에 한한다</u>)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p>	<p>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u>명령만 해당한다</u>)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p>

현행	개정
<p>산</p> <p>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 제1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p> <p>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p> <p>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 제1항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p> <p>〈신설〉</p> <p>② 삭제</p> <p>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p>로부터 양수한 재산</p> <p>2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p> <p>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28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p> <p>〈삭제〉</p> <p>25.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p> <p>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현행	개정
<p>산</p> <p>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u>취득하는 부동산</u></p> <p>4. 「<u>임대주택법</u>」 제17조 제1항 제2호의 <u>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u>이 2009년 1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p> <p>⑤ 제32조의 <u>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u>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정당한 사유없이 <u>당해</u> 사업을 폐지하거나 <u>당해</u>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u>해당</u>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u>삭 제</u></p> <p>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u>규정에 의한</u>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3. <u>삭 제</u></p> <p>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u>당해</u>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5. <u>삭 제</u></p> <p>6. <u>삭 제</u></p> <p>7. 제117조 제1항 제15호의 <u>규정에 의하여</u>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p> <p>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u>의한</u>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u>의한</u>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p> <p>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제38조 및</p>	<p>산</p> <p>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u>취득하는 부동산</u></p> <p><삭 제></p> <p>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u>대</u>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u>해당</u> 사업을 폐업하거나 <u>해당</u>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u>그</u>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u>따른</u>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u>해당</u>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7.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p> <p>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u>같은 법</u>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u>따른</u>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p> <p>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제38</p>

현행	개정
<p>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불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 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삭제〉</p> <p>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p> <p>13.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p>
<p>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p> <p>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p>	<p>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p> <p>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p>

현 행	개 정
<p>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u>대하여</u>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p>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p> <p>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영위</u>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u>영위</u>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p> <p>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p> <p>나. 제121조의8 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p> <p>다.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p> <p>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u>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영위</u>하는 사업</p> <p>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영위</u>하는 사업</p> <p>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p>	<p>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u>대해서</u>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p>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p> <p>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경영</u>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u>경영</u>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p> <p>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p> <p>나. 제121조의8 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p> <p>다.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p> <p>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제2조 제1호에 따른</u>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경영</u>하는 사업</p> <p>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제9조 제1항에 따른</u>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경영</u>하는 사업</p> <p>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p>

현행	개정
<p>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p> <p>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p> <p>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p> <p>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p> <p>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p>	<p>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p> <p>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p> <p>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p> <p>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p> <p>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p>

현 행	개 정
<p>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u>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u>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u>감면대상세액</u>”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u>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u>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u>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u>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u>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u>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p> <p>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u>외국투자가</u>”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u>주식등</u>”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u>당해</u>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u>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u></p>	<p>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u>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u>감면대상세액</u>”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u>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u></p> <p>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u>외국투자가</u>”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u>주식등</u>”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u>해당</u>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u>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u></p>

현행	개정
<p>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 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 	<p>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

현 행	개 정
<p>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u>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u>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p> <p>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u>제4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u>당해</u>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u>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u>기간내에서</u>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u>제3호의 규정에</u>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u>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8항의 규정에</u>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u>당해</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u>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u>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u>당해</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p>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u>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u>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u>하기</u>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p> <p>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u>제4항에도</u> 불구하고 <u>그</u>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u>제9조에</u>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u>기간의 범위에서</u>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u>제3호에도</u>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u>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8항에</u>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u>해당</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u>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u>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u>하기</u>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u>그</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현행	개정
<p>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u>당해</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u>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u>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u>당해</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p> <p>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u>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u>제8항의</u>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u>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u>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p> <p>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5조 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u>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⑧ 기획재정부장관은 <u>제6항의</u>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u>제7항의</u>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p>	<p>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u>해당</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u>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u>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u>해당</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p> <p>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u>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u>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u>제8항에</u>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u>받으려면 해당</u>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p> <p>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⑧ 기획재정부장관은 <u>제6항에</u>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u>제7항에</u>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p>

현행	개정
<p>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⑪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⑫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p>	<p>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⑫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p>

현행	개정
<p>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p>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

현 행	개 정
<p>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u>동안에 있어서는</u>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u>영위하기 위하여</u>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p>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u>이내에 있어서는</u>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p> <p>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p>가. <u>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u>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나. 재산세는 <u>당해</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u>당해</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p>	<p>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u>동안에는</u>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u>하기 위하여</u>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p>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u>동안은</u>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p> <p>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p>가. <u>제8항에 따라</u>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나. 재산세는 <u>해당</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u>해당</u>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p>

현행	개정
<p>제한다.</p> <p>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u>경과하는</u>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u>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u></p> <p>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p> <p>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u>소요되는</u>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p>② <u>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p> <p>③ 외국투자자 또는 <u>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u>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u>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6조의 규정에 의한</u>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한다.</p> <p>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u>지나는</u>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u>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u></p> <p>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p> <p>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u>필요한</u>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5조 제1항에 따라</u>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p>② <u>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중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5조 제1항에 따라</u>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p> <p>③ 외국투자자 또는 <u>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u>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u>기획재정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6조에 따른</u>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 행	개 정
<p>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p> <p>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p> <p>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p> <p>①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p>	<p>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p> <p>①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p>

현행	개정
<p>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u> 2.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u>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u> <p>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u>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u>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u> 	<p>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에 따라 면제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현행	개정
<p><u>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u></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p>	<p><u>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u></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현행	개정
<p>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p>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p> <p>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p> <p>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p>	<p>〈삭제〉</p>

현 행	개 정
<p><u>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u></p> <p>제121조의7(권한의 위임등) 기획재정부장관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u>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u>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u>위임 또는 위탁</u>할 수 있다.</p> <p>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u>영위하는</u>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u>당해</u>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u>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u>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u>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u>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u>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u> 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감면신청</p>	<p>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이 장의 규정에 <u>따른</u>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u>위임하거나</u> 위탁할 수 있다.</p> <p>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u>따라</u>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u>하는</u>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u>그</u>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u>끝나는 과세연도에는</u>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u>세액을 감면하고</u>, 그 다음 2년 이내에 <u>끝나는 과세연도에는</u>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u>세액을</u> 감면한다. ② <u>제1항을 적용받으려는</u>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p>

현행	개정
<p>을 하여야 한다.</p> <p>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u>대하여는</u>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u>영위하는</u>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u>영위하는</u>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u>대하여는</u> 사업개시일 이후 <u>해당</u>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u>해당</u>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p>	<p>한다.</p> <p>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u>하기</u>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u>대해서는</u>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u>하는</u>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u>하는</u>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u>대해서는</u> 사업개시일 이후 <u>그</u>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u>그</u>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u>경우에는</u>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p>

현행	개정
<p>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p>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p> <p>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p> <p>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p>	<p>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p>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p> <p>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p> <p>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p>

현 행	개 정
<p>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u>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p> <p>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u>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u>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p> <p>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p>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u>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u></p> <p>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p> <p>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u>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u>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u></p> <p>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p> <p>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현행	개정
<p>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p> <p>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p> <p>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p> <p>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추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p> <p>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p> <p>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p> <p>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추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p> <p>①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p> <p>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p>	<p>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p> <p>①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p> <p>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다.</p> <p>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u>400달러 상당액</u>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p> <p>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u>400달러 상당액</u>으로서 <u>대통령령</u>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p> <p>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u>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u>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p> <p>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u>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u>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p> <p>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p> <p>① <u>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u>개별소비세법</u>」 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삭제</p> <p>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p> <p>① <u>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에 대해서는 「<u>개별소비세법</u>」 제1조 제3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p> <p>① 「<u>국제선박등록법</u>」 제4조의 규정에 따라</p>	<p>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p> <p>① 「<u>국제선박등록법</u>」 제4조에 따라 국제</p>

현행	개정
<p>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u>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u>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2009년 12월 31일</u>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u>대하여는</u>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p>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u>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u>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u>제265조의 규정에 의한</u>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2009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u>대하여는</u>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u>2009년 12월 31일</u>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u>대하여는</u>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u>대하여는</u>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u>대하여는</u> 등록세를 면제한다. <p>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p>	<p>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u>6개월</u>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u>제221조 제1항에 따른</u>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외국선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2012년 12월 31일</u>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u>대해서는</u>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p>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u>제261조에 따라</u>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u>같은 법 제265조에 따른</u> 사업을 하기 위하여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u>대해서는</u>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u>2009년 12월 31일</u>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u>대해서는</u>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u>대해서는</u>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u>대해서는</u> 등록세를 면제한다. <p>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p>

현행	개정
<p>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u>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u>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u>2009년 12월 31일</u>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u>당해 구역안의</u>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u>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의</u>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p>〈신설〉</p> <p>〈신설〉</p> <p>② <u>제1항의</u>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u>대하여는</u> 사업개시일 이후 <u>당해</u>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u>당해</u>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u>종료하는</u> 과세연도에 있어서 <u>제1항 제1호의</u>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p>	<p>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u>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u>2012년 12월 31일</u>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u>그 구역의</u>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u>기업도시개발 특별법</u>」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u>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u>」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u>2012년 12월 31일까지</u>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u>그 지구 안의</u>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u>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u>」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p>② <u>제1항에</u>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u>대해서는</u> 사업개시일 이후 <u>그</u>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u>그</u>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u>끝나는</u> 과세연도에는 <u>제1항 제1호·제3호의</u>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p>

현행	개정
<p>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p> <p>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안의 골프장에</p>	<p>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p> <p>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p> <p>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의 골프장에 대한</p>

현행	개정
<p>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u><신설></u> 2.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u><신설></u> <p>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1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p>	<p>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p>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p>

현 행	개 정
<p>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p> <p>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p> <p>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현행	개정
<p>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기타 조세특례</p> <p>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p> <p>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u>과세표준신고</u>신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u>과세표준신고</u>신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u>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p>	<p>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p> <p>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p> <p>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50</u>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p> <p>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u>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u>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u></p> <p>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p>	<p>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u>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u></p> <p>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p>

현행	개정
<p>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u>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u>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u>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u>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u>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u>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해당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u>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u>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p>	<p>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u>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u>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u>100분의 5에</u>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u>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u>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p> <p>④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u>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u>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p>

현행	개정
<p>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p> <p>⑤ 금사업자가 <u>과세표준 신고시</u>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u>종료하는</u>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과세표준 신고시</u>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u>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으로 한다. 2. <u>과세표준신고시</u>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의 <u>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u>합계액</u>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 	<p>⑤ 금사업자가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u>끝나는</u>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u>100분의 50</u>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으로 한다. 2. <u>과세표준신고</u>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의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u>합친</u>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행	개정
<p>하여 계산한 금액</p> <p>⑥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p> <p>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p> <p>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p> <p>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p> <p>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22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p> <p>①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다목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p> <p>가.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p>	<p>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p> <p>①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
<p><u>금융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u></p> <p>나. <u>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u></p> <p>2.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p> <p>3.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p> <p>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p> <p>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p>	<p>2.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p> <p><삭제></p> <p>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p> <p>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p>

현행	개정
<p>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p> <p>1. 해당 과세기간에 <u>대한</u>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p> <p>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p> <p>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p> <p>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p>	<p>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p> <p>1. 해당 과세기간에 <u>대하여</u>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p> <p>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p> <p>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u>대해서는</u>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p> <p>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현행	개정
<p>공제한다.</p> <p>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명의를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p> <p>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명의를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명의를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p> <p>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p>	<p>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p> <p>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p> <p>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명의를 확인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명의를 확인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p>

현행	개정
<p>〈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신불카드·기명식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신불카드·기명식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 <p>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유로</p>	<p>“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p> <p>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rac{\text{초과금액} \times (\text{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text{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frac{\text{초과금액} \times (\text{제1항 제4호의 금액} / \text{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신불카드, 기명식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신불카드, 기명식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 <p>⑤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p>

현행	개정
<p>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u>미달하여</u>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u>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u>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⑤ 국세청장은 <u>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u>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의 <u>합계액</u>으로 한다.</p> <p>⑧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u>확인방법</u>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u>얻은</u>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u>현금영수증사업자</u>”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u>현금영수증가맹점</u>”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u>가산</u>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p>	<p>야 할 세액에 <u>미달하게</u>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국세청장은 「<u>여신전문금융업법</u>」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u>전자금융거래법</u>」 제2조에 따른 <u>전자금융업자</u> 및 <u>전자금융보조업자</u>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u>필요한</u>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u>합친</u> 금액으로 한다.</p> <p>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u>확인방법과 그 밖에</u>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u>받은</u>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u>현금영수증사업자</u>”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u>설치 건수</u>, <u>신용카드단말기</u>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u>현금영수증가맹점</u>”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u>가산하여</u>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p>

현행	개정
<p>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란 <u>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u></p> <p>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u>현금영수증제도의</u>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u>현금영수증제도의</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p> <p>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u>현금영수증제도</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p> <p>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p>	<p>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p> <p>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p>

현행	개정
<p>다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u>교부대상, 교부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p> <p>① <u>대통령령</u>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u>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절 조세특례제한등</p> <p>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p>	<p>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u>발급대상, 발급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p> <p>①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p> <p>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p>

현행	개정
<p>① 삭제</p> <p>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u></p> <p>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u>제104조의18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u></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u>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및 제121조의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u>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u></p>	<p>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적용받을 수 있다.</u></p> <p>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u>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u></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u>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및 제121조의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u>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u></p>

현 행	개 정
<p>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 제3항·제121조·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9 제3항 또는 <u>제121조의1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u>당해</u>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u>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적용받을 수 있다.</u></p> <p>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 제3항 또는 <u>제121조의17 제3항에 따른</u>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적용받을 수 있다.</u></p> <p>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u>그</u>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u>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u></p> <p>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u>적용받을 수 있다.</u></p> <p>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p> <p>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거주자에 <u>한하여 이를 적용한다.</u></p> <p>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p>	<p>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p> <p>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u>대해서만 적용한다.</u></p> <p>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p>

현행	개정
<p>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p>3.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p> <p>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p>	<p>3.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p> <p>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p>
<p>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p> <p>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p>	<p>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p> <p>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p>

현 행	개 정
<p>· 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u>경우에 한한다</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u>공업지역안에서</u>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u>새로이</u>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u>소재하는</u>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u>대통령령이</u>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u>대통령령이</u> 정하는 <u>정보통신장비를</u> 제외한다)에 <u>대하여는</u>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u>경우만 해당한다</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u>공업지역에서</u>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p>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u>새로</u>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u>있는</u>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u>정보통신장비는</u> 제외한다)에 <u>대해서는</u>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32조(최저한세)</p> <p>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추징세액</u>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세액공제</u>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u>계산함에 있어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u>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u></p>	<p>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p> <p>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추징세액</u>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세액공제</u>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u>계산할 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u>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u></p>

현 행	개 정
<p>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p>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p>	<p>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p>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p>

현행	개정
<p>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추징세액</u>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u>계산함에 있어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u>계산한 세액</u>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u>대하여는</u>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계산</u>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의 <u>규정에 의한</u>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u>외의 지역</u>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u>규정에 의한</u>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p>〈<u>신설</u>〉</p>	<p>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추징세액</u>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u>계산할 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u>계산한 세액</u>(이하 “<u>소득세 최저한세액</u>”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u>대해서는</u>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u>소득금액</u>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에 <u>따른</u>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u>밖으로</u> 이전하는 <u>경우는</u>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에 <u>따른</u>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p>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p>

현 행	개 정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p> <p>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p> <p>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p> <p>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p> <p>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p> <p>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p>	<p>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p> <p>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p> <p>-----.</p> <p>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p> <p>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p> <p>-----</p> <p>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p> <p>-----</p> <p>-----</p> <p>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p> <p>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p>

현행	개정
<p>분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5개 과세기간의 <u>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u>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p> <p>② <u>제71조의 규정에 따라</u>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u>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u> 이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u>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u></p> <p>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p> <p>① 삭제</p> <p>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삭제</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p> <p>3. (생략)</p> <p>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p>	<p>분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5개 과세기간의 <u>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u>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p> <p>② <u>제71조에 따라</u>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u>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 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u> 이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u>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u></p> <p>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p> <p>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p> <p>3. (현행과 같음)</p> <p>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p>

현 행	개 정
<p>입한다.</p> <p>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② <u>제1항의</u>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u>대하여는</u>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p>	<p>입한다.</p> <p>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u>제1항을</u>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u>대해서는</u>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p>

현행	개정
<p>부과되는 조세</p> <p>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④ 삭제</p> <p>⑤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p> <p>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p> <p>① <u>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 	<p>부과되는 조세</p> <p>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⑤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p> <p>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까지 적용한다.</p> <p>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

현 행	개 정
<p>하는 경우 ② 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 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p>	<p>여세를 부과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 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p> <p>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p> <p>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중전 제3</p>	<p>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p> <p>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p> <p>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중전 제3</p>

현 행	개 정
<p>7조의 개정규정에 <u>한한다</u>)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u>순차로</u> 공제한다.</p> <p>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u>제24조 내지 제26조</u>,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u>개정규정에 한한다</u>)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u>당해</u>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u>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u>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7조의 개정규정만 <u>해당한다</u>)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u>차레대로</u> 공제한다.</p> <p>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u>제24조부터 제26조까지</u>,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u>개정규정만 해당한다</u>)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u>같은 조에 따라</u>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u>해당</u>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u>제64조에 따라</u>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p> <p>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을</u></p>

현 행	개 정
	적용받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제99조 제2항 또는 제99조의3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 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① 제45조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9조 제1항 제3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

병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제38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87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100조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제119조 제1항 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 제1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9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0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2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8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7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7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